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 · 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867
----------	-----

2025. 3. 21.(금)  
교육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김정일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: 2025년 3월 4일

다. 회부일자: 2025년 3월 5일

라. 상정일자: 2025년 3월 13일

(제4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○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김정일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「과학교육진흥법」 일부개정(2010.3.17.)으로 지방과학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근거 조항이 삭제되었고, 「과학교육진흥법」을 전부개정한(2017.10.24.) 「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법」은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융합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음

- 이에 지방과학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본 조례 존치 근거 및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

## 나. 주요내용

- 가. 「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」 폐지

## 3. 검토보고 요지

(수석전문위원 신원호)

### 가. 조례 폐지이유 검토

- 1967년 제정된 「과학교육진흥법」이 전부개정(2001.3.28.)됨에 따라 과학교육진흥의 세부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지방과학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
- 그러나 부처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의 실효성이 감소한 중앙과학교육심의회를 폐지함에 따라 「과학교육진흥법」 일부개정(2010.3.17.)을 통해 중앙과학교육심의회와 교육감 소속 지방과학교육심의회 관련 규정이 삭제됨
- 또한, 「과학교육진흥법」이 「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법」으로 전부개정(2017.10.24.)됨에 따라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의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융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
- 이에 지방과학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과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음

#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「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」 제1조(목적)는 충청북도과학교육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근거가 삭제되어 조례의 목적이 실효성이 없음
- 또한,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는 상위법 근거 폐지에 따라 2010년 이후 미운영되고 있어 운영의 실효성 또한 없다고 판단됨

##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폐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과학교육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삭제되어 존치 근거 및 실효성이 없으므로 실효성 없는 위원회 폐지 및 조례 정비 측면에서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며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
-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 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설치·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 법령

## □ 과학교육진흥법

[시행 2008. 2. 29.] [법률 제8852호, 2008. 2. 29., 타법개정]

**제5조(과학교육심의회)** ① 과학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중앙과학교육심의회(이하 “중앙심의회”라 한다)를, 그 세부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 소속하에 지방과학교육심의회(이하 “지방심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 2. 29.>

② 중앙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, 지방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[시행 2010. 6. 18.] [법률 제10083호, 2010. 3. 17., 일부개정]

**제5조(정의) 삭제** <2010. 3. 17.>

## □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법

[시행 2018. 4. 25.] [법률 제14903호, 2017. 10. 24., 전부개정]

**제7조(과학·수학·정보 교육융합위원회의 설치·운영 등)** ①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융합위원회(이하 “융합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1.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
  2.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·융합에 관한 사항
  3.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본정책과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 4. 그 밖에 과학·수학·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
- ② 그 밖에 융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